

**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**(신·구 조문대비표)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4조(신고서의 정정·취하) ① 신고인이 신고서를 정정 또는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정정 또는 취하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오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서 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기간내에 발생한 오류</u></p>	<p>제4조(신고서의 정정·취하) ① ----- ----- <u>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,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의 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자를 기재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</u></p>	<p>○ 법적 근거 없는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</p> <p>○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또는 질의 이전 신고분도 결과에 따라 면제하도록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6. ~ 9. (생략)</p> <p>10.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‘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’를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. 다만, <u>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정정한 경우에 한함.</u></p> <p>11. ~ 13. (생략)</p> <p>③ 세관장은 <u>사유서</u> 등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귀책사유자 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 또는 ‘<u>발급협정명</u>’ 을 ----- &lt;단서 <u>삭제</u>&gt;</p> <p>1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정정 또는 취하 내용과 증빙자료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오류점수 면제 대상 확대</p> <p>○ 법적 근거 없는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</p>
<p>제6조(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) ① <u>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류점수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신고인 등은 이를 확인하거나 통보를 받은 달의 20일까지 또는 오류점수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가 종료된 후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<u>오류내역에 대한 의견 제출(별지 제3</u></u></p>	<p>제6조(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) ① <u>제5조에 따라 열람하거나 -----</u> ----- ----- <u>열람하거나</u> <u>통보받은 날부터 ----- 분기</u> <u>다음달 20일까지 -----</u> ----- ----- <u>별지 제3호서식으로 오</u></p>	<p>○ 문구 정비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출 기간에 <u>보류기간 연장신청(별지 제4호 서식)</u>을 하여야 하고, 세관장은 보류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그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여 계산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보류기간 연장신청 및 오류점수 확정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의 타당성을 <u>검토하여</u> 오류점수 등을 확인하여 정정등록한 후, <u>오류점수 확정 통보서(별지 제4호 서식)</u>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	<p><u>여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,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검토하고</u> ----- -----, <u>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점수 확정 통보서를</u> ----- -----.</p>	<p>○ 문구 정비</p>
<p>제8조(오류점수의 계산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오류점수 이외에 수출입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</p> <p>1. 신고수리 후에 <u>란</u>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<u>오류점수는 수출 18점, 수입 22점으로 한다.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8조(오류점수의 계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란 또는 행을</u> ----- ----- <u>오류점수는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<u>가.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 18점, 수입신고 22점</u></p>	<p>○ 규정 보완 → 행 추가삭제의 경우 부과하는 오류점수 명시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2. ~ 5. (생략)</p> <p>6.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오류를 통보한 신고내역이 오류로 판명되었음에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, 세관직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<u>별표3</u>에 규정된 점수의 4배로 한다.</p> <p>③ <u>수출입신고 품목사항의 정정에 따라</u> <u>각란별로 발생하는 오류점수는 다음의 각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1. 수입신고의 경우 <u>란별 88점</u></p> <p>2. 수출신고의 경우 <u>란별 72점</u></p> <p>④ 오류점수는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한 날이 속하는 월에 합산하여 계산하며, <u>제4조 제1항 제3호</u>부터 <u>제5호</u>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</p>	<p><u>나. 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수출신고, 수입신고 각 10점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<u>별표 3</u> ----- -----.</p> <p>③ <u>수출입신고 ----- 신고건별 또는</u> <u>란별로 발생하는 월별 오류점수는 다음 -----</u></p> <p>1. ----- <u>신고건별 500점, 란별 88점</u></p> <p>2. ----- <u>신고건별 500점, 란별 72점</u></p> <p>④ ----- ----- <u>제4조제1항제3호</u> ----- -----</p>	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 <p>○ 신고건별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 설정 * 규제혁신전략회의 건의 과제 채택</p> 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2. 수입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<u>2일이</u> 내 신청정정 시 : 항목당(제8조제2항제3호는 건당) 오류점수는 0.2점으로 계산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정정시기에 따른 면제 및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9조(오류에 대한 제재 등) ① 관할지세관장은 오류를 발생시킨 신고인 등에 대해서 제4조 및 <u>제8조의</u> 규정에 의거 전 분기 전국 세관에서 발생한 오류점수를 수출 또는 수입 업무별로 구분하여 누적한 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별로 <u>별표1</u>의 제재기준에 따라 P/L제재를 한다. 다만, 관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/L 제재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	<p>2. ----- <u>2일 이</u> 내 ----- 시: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</u>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오류에 대한 제재 등) ① -----</p> <p>----- <u>제8조에 따라</u> -----</p> <p>----- <u>별표 1</u> -----.</p>	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② (생략)</p> <p>③ 업무별로 오류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%이상인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P/L 제재와 병행하여 <u>별표2</u>의 조정내역에 따라 해당 업무의 검사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달의 말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<u>제5조</u>부터 <u>제7조</u>까지에 따라 확정된 제재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⑥ <u>제대대상자</u>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<u>제6조</u>부터 <u>제7조</u>까지에 의하여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초과</u> ----- ----- ----- <u>별표 2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제5조부</u> ----- <u>터</u> ----- -----.</p> <p>⑥ <u>제재대상자</u>----- <u>제6</u> <u>조와 제7조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검사비율 상향관련 오류점수 기준 변경 및 띄어쓰기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수정</p> <p>○ 오타수정</p>
<p>제10조(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의 선정대상은 분기별 수출입신고 건수가 1,000건 이상인 관세사로서 최근 3</p>	<p>제10조(성실신고 캠페인 운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년간 「관세법」 위반, 「관세사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「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실적이 없고, 비위전력 직무보조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. 다만, “최고의 수출입 신고인”으로 선정된 자는 향후 1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④ 세관장은 제1항의 “성실신고 캠페인” 기간 중에 “신고서 품명·규격 집중심사 기간”을 운영하여 제9조의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는 자체 선별관리를 하거나 관세청 <u>통관기획과</u>에 그 결과를 캠페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보고하여 검사 강화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1조(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) ① (생략)</p>	<p>----- 「관세사법」 제27조에 따른 징계 및 이 고시 제9조에 따른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통관물류정책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조직명 현행화</p> <p>○ 신고인 편의를 위해 한국관세사회가 교육 이수자 명단을 각 관할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② 제1항에 따라 <u>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</u>은 <u>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받은 달의 25일 까지</u>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4조(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) ① 관할지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경우,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특례적용 범위 내에서 그 제재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A등급</u> : 제재의 30%</p> <p>2. <u>AA등급</u> : 제재의 70%</p> <p>3. <u>AAA등급</u> : 제재의 70%</p> <p>② <u>제9조 제1항</u>에 따라 P/L제재를 하는 경우 <u>별표1</u>의 'P/L 제재기준'의 일수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수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</p>	<p>② ----- <u>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</u> ----- ----- <u>교육한 달의 25일까지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A등급</u>: -----</p> <p>2. <u>AA등급</u>: 제재-----</p> <p>3. <u>AAA등급</u>: -----</p> <p>② <u>제9조제1항</u>----- -- <u>별표 1</u>----- ----- -----.</p>	<p>세관으로 일괄 제출하는 규정 마련</p> <p>* 한국관세사회 위탁업무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관련</p> <p>○ 띄어쓰기 및 오타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검사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별표2의 ‘검사비용 상향 조정내역’의 검사비용에 제1항에 따른 등급별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.</p> <p>제15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&lt; 신설 &gt;</p>	<p>③ 제10조제3항----- ----- 별표 2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5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2023년 1월 1일----- ----- 12월 31일----- -----.</p> <p><b>부 칙</b> &lt;고시 제2023-00호(2023. 2. 28.)&gt;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제3조(적용례) ① 제8조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부과되는 오류점수에 적용한다.</p>	<p>○ 재검토기한 재설정</p> <p>○ 부칙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----	-----	----

[별표2] <오류점수(비율)별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(제9조 제3항)>

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	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
업무별 오류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% 이상인 경우	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5%를 추가하여 상향조정
업무별 오류점수가 1,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	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10%를 추가하여 상향조정
업무별 오류점수가 1,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70% 이상인 경우	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15%를 추가하여 상향조정
업무별 오류점수가 2,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100% 이상인 경우	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20%를 추가하여 상향조정

※ 적용 예 : 수입검사비율이 2.4%인 경우 검사비율 5% 상향 → 2.4% + 5% = 7.4%

② 제8조의2제1항의 정정사유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 기준(별표4) 개정 사항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[별표2] <오류점수(비율)별 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(제9조 제3항)>

오류점수 및 오류점수비율	검사비율 상향 조정내역
업무별 오류점수가 500점 <b>초과</b> 이고 오류점수비율이 30% 이상인 경우	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<b>5%p</b> 를 추가하여 상향조정
업무별 오류점수가 1,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	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<b>10%p</b> 를 추가하여 상향조정
업무별 오류점수가 1,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70% 이상인 경우	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<b>15%p</b> 를 추가하여 상향조정
업무별 오류점수가 2,0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비율이 100% 이상인 경우	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부터 2개월간 수출입 업무별 전분기 평균 검사비율에 <b>20%p</b> 를 추가하여 상향조정

※ 적용 예 : 수입검사비율이 2.4%인 경우 검사비율 **5%p** 상향 → 2.4% + 5% = 7.4%

○ 신고건별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 설정에 따른 검사비율 상향 최저기준 변경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4] 신고서 정정사유별 오류점수 면제 기준(제8조의2 제1항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신고 정정 사유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695 913 951"> <thead> <tr> <th>부호 코드</th> <th>내용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4</td> <td>적하목록(반입내역)정정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8</td> <td>자진심사결과(부호24 제외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3</td> <td>ACVA 승인에 따른 정정</td> <td>오류점수 면제</td> </tr> <tr> <td>&lt;신 설&gt;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신고 정정 사유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1193 913 1337"> <thead> <tr> <th>부호코드</th> <th>내용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&lt;신 설&gt;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호 코드	내용	비고	14	적하목록(반입내역)정정		28	자진심사결과(부호24 제외)		33	ACVA 승인에 따른 정정	오류점수 면제	<신 설>			부호코드	내용	비고	<신 설>			<p>[별표 4] 신고서 정정사유별 오류점수 면제 기준(제8조의2제1항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신고 정정 사유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695 1675 951"> <thead> <tr> <th>부호 코드</th> <th>내용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4</td> <td>적재화물목록(반입내역) 정정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8</td> <td>자진심사결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3</td> <td>ACVA 승인, 연례보고에 따른 정정</td> <td>오류점수 면제</td> </tr> <tr> <td>41</td> <td>원산지 자율점검 결과</td> <td>오류점수 면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신고 정정 사유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58 1193 1675 1337"> <thead> <tr> <th>부호코드</th> <th>내용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1</td> <td>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, 발급 협정명 정정</td> <td>오류점수 면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호 코드	내용	비고	14	적재화물목록(반입내역) 정정		28	자진심사결과		33	ACVA 승인, 연례보고에 따른 정정	오류점수 면제	41	원산지 자율점검 결과	오류점수 면제	부호코드	내용	비고	31	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, 발급 협정명 정정	오류점수 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부호 14) 관세법 용어 적용</li> <li>○ (부호 28) 부호 24 삭제사항 반영</li> <li>○ (부호 33, 41*) 자율정정 활성화를 위한 면제 사유 추가</li> <li>* 내부규제개혁 채택과제</li> <li>○ (부호 31) 원산지 증명서 발급여부의 신고정확도 개선을 위해 부호코드 신설</li> </ul>
부호 코드	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4	적하목록(반입내역)정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8	자진심사결과(부호24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3	ACVA 승인에 따른 정정	오류점수 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호코드	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호 코드	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4	적재화물목록(반입내역) 정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8	자진심사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3	ACVA 승인, 연례보고에 따른 정정	오류점수 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1	원산지 자율점검 결과	오류점수 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호코드	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1	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, 발급 협정명 정정	오류점수 면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